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 허용과 그 영향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자산 운용 및 연금수령 선택범위가 한층 다양해짐. 또한 최근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 시 종신형 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종신형 연금 수령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어 생명보험회사는 지급기 연금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금계좌 이체 관련 법률 규정이 개정¹⁾ · 시행되어 만 55세 이상 은퇴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²⁾과 세제적격 연금저축³⁾ 간 적립금 이전 시 과세이연이 허용됨.⁴⁾

● 이러한 법률 개정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여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임.⁵⁾

■ 동 법률 개정 이전에는 IRP의 노후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일시금 인출로 보아 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하였음.

● 예컨대, 은행의 IRP에 있는 적립금을 종신형 연금 수령을 위해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기타소득세(세율 15%)를 과세함.

●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고용주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율 6~38%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본인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4 제2항 신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조기퇴직할 경우 은퇴 시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운용하고 은퇴 시점에는 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능을 하는 계좌임.
3) 연금저축은 연금자산 확보를 위해 개인이 임의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함.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7. 13),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5) 국가법령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신·구법 비교 설명.

- 연금저축에서 IRP로 자금 이전 시에도 적립금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인해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연금자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운용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 가입자는 은퇴자산의 운용지시가 가능한 IRP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자산을 모아놓고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운용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금저축을 통해 자산 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할 수 있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령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음.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하지만,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여타 금융기관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제공하는 확정형 연금만을 제공함.

■ IRP적립금을 생명보험회사로 이전 시 걸림돌이던 세(稅) 부담이 사라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IRP에 예치되어 있던 적립금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로 이동할 수 있음.

- 퇴직급여 대상자의 절반(48%)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⁶⁾
- 또한, 최근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한 연금저축 가입자의 적립금 수령형태를 분석한 연구⁷⁾에 따르면 대다수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종신형 연금 수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논문에 따르면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한 연금계약자의 79%가 종신형을 선택하였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종신형 연금수령을 원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IRP와 연금저축 간 적립금 이전 허용은 가입자의 자산운용과 연금수령에 있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에는 수령기 연금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7. 17), “직장인, 노후대비에 퇴직급여 중요하지만... 은퇴 전 사용 경험 91.6%”.

7) 이정희(2013), 「세계적격 개인연금 계약자의 지급옵션 선택분석」,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2호, 보험연구원.